

◦ 의견

개정(안)	수정(안)	사 유
[별표1]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가. 참여기술인 - ‘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’(국토부 고시)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%를 적용할 수 있음.(단,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~100%를 인정한다.) 또한,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(단,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%를 적용할 수 있음)	[별표1]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가. 참여기술인 - ‘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’(국토부 고시)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%를 적용할 수 있음.(삭제) 또한,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조건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(단,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%를 적용할 수 있음)	◦ 사업별 성격이 비슷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고 특히나 안전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고도화 되는 실정입니다.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분야가 다른 경우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하는 것은 보편화가 아닌 기술발전의 퇴보라 생각됩니다.
나. 용역수행실적 (3) 전차용역 수행실적 -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[용역의 종류,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, 단독·공동·하도급여부,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]에 따라 평가 -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-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,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	나. 용역수행실적 (3) 전차용역 수행실적 -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[용역의 종류,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, 단독·공동·하도급여부,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(면적, 길이, 금액 등)]에 따라 평가 -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-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,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	◦ 기본계획의 전차로서의 지위는 당해사업의 단편을 보는 것이 아닌 해당 지자체의 기존시설과 계획사업의 전체적인 조합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므로 비율을 적용할 시 발주자 마다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발주되는 사업마다 논쟁이 일어날 것입니다.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성 확보는 당연지사 이기에 논란의 여지를 두는 개정안은 수정되어야 합니다.